정부시설공사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제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부은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KOSHA18001
OHSAS18001

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인증비교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및 시행 일자 : 2012.4.2.**

□ **적격심사기준**

○ **공동도급 참여 신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완화(별표, 시행 '12.5.1)**

– 등록기간 3년 미만인 신설업체 공동도급 참여시 만점기준 완화

– 전문공사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3년실적 1/2배이상 → 평가면제

– 전문공사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3년실적 2배 이상 → 1/2배 이상

※ 신설업체 각각의 시공비율은 20%이하, 합산 시공비율은 40%이하로 제한

[산정예시]

ex) 기계설비 2억4천만원 공사에서 신설업체 2개사(시공비율 각 20%)와 대표사(60%)의 시공실적 만점기준

(현행) 추정금액 2억4천만원의 1/2배인 1억2천만원의 실적이 나와야 만점인데 신설업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대표사는 2억원의 실적 필요

(개정) 대표사 자신의 만점기준인 1억2천만원 실적만 필요

□ **예정가격산정기준**

○ **예정가격 산정 시 최근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제6조)**

– 발주기관이 과거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이용해 예정가격을 낮추는 사례 방지

□ **최저가 적정성심사기준**

○ **최저가공사 노무비 저가 투찰 시 낙찰배제(제8,15,21조, 시행 '12.5.1)**

– 업체가 작성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주계약자 발주 시 입찰경쟁성 고려(제2조의3)**

– 발주기관은 주계약자 발주 시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고려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공사분담금 미납 시 탈퇴(제2조의3)**

– 구성원이 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해당 구성원에게 미지급

– 분담금 3회 이상 미납 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구성원 탈퇴조치 가능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부정당업자처분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별표2 · 3, 시행 '12.5.1부터)**

–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만료 후 동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인도 2점 감점

2.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및 시행 일자 : 2012.4.2.**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통합**

○ **현행 11개의 계약예규를 2개로 통합하여 개편**

개정전	개정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종합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공모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영상태평가 시 자산회전율 폐지**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자산회전율을 폐지하여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기회 확대

개정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 심사항목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7.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7.0
3.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5.0
4. 영업기간	2.0

개정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 심사항목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10.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10.0
〈삭제〉	
4. 영업기간	1.0

○ **전문 · 설비 3억 미만 공사 신용평가등급 완화**

– 중소기업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간 점수차를 1점 ⇒ 0.2점차로 완화

개정 내용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문화재 · 지하수개발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개정전	개정후
BB+, BB° 이상	B+ 이상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0.0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6.0

○ **소규모(3억원미만) 복합 전문공종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설**

–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단 복합공종 3개 이상시 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만 평가 가능

○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신설**

– 100억~50억 공사의 경우에도 업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시공 내실화 유도

○ **전문 · 설비 3억 미만 공사 접근성 평가방법 명확화**

–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

○ **평가대상이외의 구성원 평가 방법 개선**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보유)는 평가토록 개정

○ **소수점 처리방법 명확화**

–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 그 외의 경우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다만, 등급 등의 이상 · 미만 등 구간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점수 산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입찰참여 확대**

– 발주기관은 공종을 분리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입찰업체는 분리된 공종에 맞게 주계약자 · 부계약자를 선택하여 참여

개정전	개정후
〈신 설〉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토공, 포장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 ①토목(주)+토공(부1)+포장(부2), ②토목 · 토공(주)+포장(부), ③토목 · 포장(주)+토공(부)

○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 부계약자 실적만점 기준 완화**
– 중소전문업체의 입찰참여를 위해 만점기준을 추정가격 2배에서 1.7배로 완화

○ **설계변경 시 시공주체 명확화**
– 설계변경 시 시공주체 구분이 곤란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

○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사유 개정**
–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관계의 계열회사 금지항목 삭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보완**
– 물가변동시 총액증액조정과 단품증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기준 불명확
– 원칙적으로 총액증액조정을 우선하되, 예외적인 경우 단품증액조정

○ **4대 보험정산 중 상용근로자 의미 명확화**
– 상용근로자를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대리인은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만 인정

□ **선금 · 대가 지급 요령**

○ **선금지급 대상 구체화**
–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도 선금 지급이 가능

개정전	개정후
〈선금지급 대상〉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선금지급 대상〉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 내용**

○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신설**
– 혼합방식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협정서 양식의 부재로 계약당사자들이 임의로 협정서를 작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방식에 따른 표준협정서 신설

□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시 지역제한 확대 범위 규정 정비**
–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은 해상인접에서 제외하여 인접 시 · 군에 포함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시 · 군 · 구가 아닌 시 · 도로 지역제한한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